

仲裁研究, 第 16 卷 第 3 號
2006년 12월 1일 발행, pp.91-125

논문접수일 2006. 10. 25
게재확정일 2006. 11. 20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과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The 2005 Revision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Related to Chinese
Arbitration Law

윤 진 기** Jin-Ki Yoon

〈목 차〉

- I. 서 언
- II. 2005년 CIETAC 중재규칙의 개정
- III.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 IV. 결 론

주제어 : 중재, 중국중재, 중국, 중국법, 중재규칙, 외국법

* 이 논문은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개재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중재학회 「2006년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중국 중재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2005년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후,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I. 서 언

중국은 2005년 5월 1일부터 중국국제상회중재규칙을 대폭 개정 실시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재정비하였다.¹⁾ 중국은 이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중국 중재법 및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국 중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이라 약칭한다)을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시켜 같은 날 공포하여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실시해 왔다. 당시 중재법은 그동안 중국의 중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로 함으로써 중국의 중재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혁을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으나,²⁾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중재법은 모델중재법³⁾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재법의 통일화 경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⁴⁾ 특히 당사자자치의 결여, 중재기구의 독립성 결여, 사건관할의 불분명, 중재규칙선정의 부자유, 중재합의준거법 규정의 부존재, 중재합의 유효요건의 엄격성, 중재인선정의 비합리성,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 결여, 증거조사의 문제,

1) 중국국제상회는, 1995년 9월 1일부터 중국 중재법이 시행되면서, 1995년 9월 4일 중재규칙을 개정한 후, 1998년 4월 28일, 2000년 9월 5일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고, 2005년 1월 11일 다시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律釋評(北京 : 法律出版社, 1996), p.1. 1994년 중재법을 제정하기 전에 14개의 법률, 80여개의 행정 법규, 200개에 가까운 지방 법규가 중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제도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하였다.

3) 원명은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며, 일반적으로 "Model Law"로 약칭된다. 원문은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참조. 모델중재법은 조약이 아닌 모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바, 국내법간의 조화와 개선을 위한 바람직하고 건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고, 중재법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쟁점사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뛰어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 자세한 것은 윤진기, "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경남법학, 제14집,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2. 28. 참조

보전조치상의 문제, 중재판정 집행관련 문제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⁵⁾

비록 한계는 있지만, 새로운 중재규칙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또 중국의 중재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개선된 것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2005년 협의중재기구인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 'CIETAC'으로 약칭한다)⁶⁾의 중재규칙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중재규칙의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중 협의중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정도를 분석하고, 중요한 문제점 중에서 상존하는 문제점을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II. 2005년 CIETAC 중재규칙 개정

1. 중재규칙 개정의 경과

2004년 7월 5일, CIETAC은 주임회의에서 기존의 중재규칙을 개정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주임회의의 중재규칙 개정 결의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는 전문작업반을 구성하고, 중재위원회는 CIETAC 화남분회, 상해분회, 및 북경총회에서 5차례의 좌담회를 실시하였고,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 사건처리 인원, 중재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

5) 자세한 것은 윤진기, "중국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중재, 제291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봄;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신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3/2, 한국중재학회, 2004. 02. 27 참조.

6)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구 명칭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로서 그 뒤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명칭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며 합의성격 또는 비계약성격의 경제무역 등 분쟁을 중재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한다.(2005년 중재규칙 제2조 제1항) 중재위원회는 "중국국제상회중재원"이란 명칭을 병용한다.(2005년 중재규칙 제2조 제2항)

사 및 기업의 고급 법률 고문을 구성하여 중재규칙 개정에 대한 좌담을 진행하였다.

CIETAC은 규칙개정의견수렴안을 CIETAC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회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국내외 주요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을 비교 연구한 기초 위에서, 중재인, 비서국 업무담당자, 및 변호사의 의견과 건의를 종합하여, 중재연구소는 전후로 중재규칙의견수렴안에 대하여 4차례의 개정을 행하였다.⁷⁾

CIETAC은 다방면의 논증을 거치고, 반복적인 연구를 한 후에, 규칙 개정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규칙개정초안은 심사를 거쳐 2005년 1월 11일에 최종적으로 통과됨으로서 중재규칙이 개정되었다.

2. 중재규칙 개정의 지도사상

중재규칙 개정 당시 CIETAC의 중재규칙에 대한 태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국제경제재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개정에 관한 설명」에 “중재규칙은 중재절차의 안내일 뿐만 아니라 중재위원회의 서비스 약속”이라고 언급할 만큼⁸⁾ CIETAC의 태도가 고객지향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CIETAC의 태도는 중재규칙 개정의 지도사상에 반영되어 있다.

중재규칙 개정의 지도사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 아래서 당사자의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 둘째, 국제적 국내적으로 앞선 방식을 충분히 참고하고, 중재절차를 보완하여 중재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당사자의사자치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중재판정부의 관

7) 關於修訂《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的說明, 2004年12月16日于北京,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홈페이지> 首頁 > 新聞動態 > 貿仲2005版新規則出台, <http://www.cietac.org.cn/news/xd.htm>, 一.修訂規則的過程 1.

8) 위의 자료, 二.修訂規則的指導思想.

리권을 강화한다. 넷째, 중재기구의 중재인과 중재사건에 대한 질 관리를 제고하고, 중재기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다섯째, 업종중재(行業仲裁)와 전문중재(專業仲裁)를 발전시켜서, 시장주체들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여섯째, 구체적인 개정 기술에 있어서, 절차의 대칭성(對稱性)과 선택성에 주의하고, 쌍방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당사자에게 절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일곱째, 동시에 절차의 실행가능성(可操作性)을 강조한다.⁹⁾

3. 중재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1) 중재규칙의 기본 구조에 관한 조정

개정 중재규칙은 모든 조항에 소제목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전문적인 표제로 이름을 붙이고, 아울러 각 조 아래의 각 항에 대하여 번호를 붙였다. 동시에 원 규칙의 격식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기초 위에서, 규칙의 장절과 조항을 조정하여, 그것이 더욱 조리성(條理性)과 논리성을 갖도록 하였다. 개정 중재규칙은 6장 71조로 나누고, 본조 앞에 조문목록을 추가하여 분명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중재규칙이 각 조 아래의 각 항은 표시가 없어서 인용하기가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2) 업종중재에 관한 규정 추가

업종중재는 CIETAC의 발전 방향의 하나이다. 개정 중재규칙은 현실 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특정 업종센터를 설립하는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다.¹⁰⁾ 동시에 제4조에 “규정의 적용”에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업종중재규칙 또는 전문중재규칙을 적용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9) 위의 자료.

10) 중재규칙 제2조 제9항.

중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업종 또는 전문중재인 명부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¹¹⁾

(3) 관할 범위에 관한 규정 간편화

개정 중재규칙은 관할 범위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간편화시켰다. 2000년 중재규칙 제2조의 수리하지 않는 분쟁에 대한 열거에 관해서는 중재법에 이미 명확한 규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거는 당사자가 약정한 적용법의 규정과 모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중재규칙에서는 수리하지 않는 분쟁에 대한 열거는 삭제하였다.¹²⁾

(4) 규칙의 적용

개정 중재규칙은 제4조 제2항에는 “당사자가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거나, 이 규칙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그 약정이 실시할 방법이 없거나 중재지의 강제적인 법률규정과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구현하였다. 단서의 제외조항은 그것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실행가능성(可操作性)을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재지의 강제적인 규정에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¹³⁾

또 개정 중재규칙 제4조는 동시에 제3항과 제4항을 추가하여 규칙의 적용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였다. 제3항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의 적용을 약정하였으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한다는 것을 약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여, 당사자가 중재의사를 실현하도록 돋는 데 있다. 제4항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업종중재규칙 또는 전문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또 그 분쟁이 당해 규칙 적

11) 중재규칙 제2조 제10항.

12) 중재규칙 제3조 참조.

13) 關於修訂《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的說明, 앞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4.

용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으로 중재위원회의 각 규칙 간의 적용관계를 해결하였다.¹⁴⁾

(5) 중재합의의 서면형식 및 독립성의 원칙 강화

2000년 중재규칙은 “서면”형식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개정 중재규칙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고하여 제5조 제3항에 “서면형식은 계약서, 서신, 전보, 팩스, 전자통신 및 전자우편 등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식이 포함된다. 중재신청서와 중재답변서의 교환 중에 일반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고, 다른 당사자가 부인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서면형식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였다.

개정 중재규칙 제5조 제4항은 사법해석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합의의 독립성 원칙을 더욱 강화하여, “합동의 변경, 해제, 종료, 양도, 실효, 무효, 효력 미발생, 취소, 및 성립여부는 모두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다.¹⁵⁾

(6) 중재관할권 이의의 결정권에 관한 규정 개선

국제상사중재 중 관할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중재판정부는 중재관할권의 이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법은 오히려 중재관할권 이의에 대한 결정권을 중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¹⁶⁾ 이 중재법의 규정 때문에, 개정 중재규칙 제6조는 여전히 중재위원회가 중재합의 및 관할권 이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가 내린 관할권 결정과 중재판정부가 실체심리 후 내린 결론이 서로 모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중

14) 위의 자료.

15)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5.

16) 중국 중재법 제20조.

재규칙 제6조는 제2항에서 동시에 중재위원회가 표면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관할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다만, 중재위원회가 표면적인 증거에 의하여 내린 관할권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심리 과정에서 발견한 표면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 및/또는 증거에 근거하여 다시 관할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현실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개정 중재규칙은 여전히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결정내리도록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7) 신의조항, 공평조항 및 이의포기조항 추가

개정 중재규칙은 제7조에서 당사자는 성실하고 협력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규정과 제19조에서 중재인은 각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평등하게 각 당사자를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들과 제18조 “이의포기”조항은 모두 선언적 조항을 으로서, 당사자와 중재인이 중재절차 중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절차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였다^{18).}

(8) 기한 및 기간 단축

개정 중재규칙은 기타 중재규칙의 기한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근거하고, 아울러 실제적인 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재사건의 심리기한을 상대적으로 단축하여, 섭외사건은 판정부 구성 후 6개월로 단축하고, 국내사건의 심리 기한은 중재판정부 구성 후 4개월로 단축하고, 간이절차의 심리기한은 중재판정부 구성 후 3개월로 하고, 간이절차의 서면심리와 개정심리의 심리기한을 다시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동시에 답변, 반대청구, 개정통지의 발송기간을 단축하였다. 기한의 장단을 확정함에 있어서, CIETAC이 의지한 원칙은 당사자가 사건

17) 關於修訂《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的說明, 앞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6.

18)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7.

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도록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 중재 절차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고, 중요하게는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를 신속하게 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¹⁹⁾

(9) 중재인의 선정에 규정 정비

개정 중재규칙 제2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인명부 외에 중재인을 약정한 경우에, 당사자가 선정한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 인사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법에 따라 확인한 후, 중재인,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을 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한 조건이 구비된 상황 하에서, 즉 당사자가 공동으로 약정하고 아울러 중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사자는 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명부제를 강제하는 제한을 돌파하여 당사자가 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권리를 부여하며,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법정 자격을 구비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상황 하에서, 당사자의 중재인 선정 의사를 최대한도로 존중한 것이다.

개정 중재규칙 제22조는 의장중재인 선정절차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절차는 동시에 단독 중재인의 선정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은 중재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당사자에게 의장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 의장중재인 선정을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한다.²⁰⁾

그러나 중재인 선정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10) 중재인의 교체

개정 중재규칙 제27조 제1항은 중재인이 법률상 사실상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이 규칙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직책을 이행하

19)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8.

20)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9.

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직권에 의하여 중재인을 스스로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중재위원회 주임의 중재인에 대한 감독 관리권을 강화하여, 중재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기관중재의 장점과 우세를 구현한 것이다.²¹⁾

(11) 결원 중재판정부의 계속심리 규정

개정 중재규칙 제28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참조하여, 엄격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결원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절차가 개별 중재인의 원인으로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한다.²²⁾

(12) 중재지와 심리장소의 명확한 구분

개정 중재규칙 제31조 및 제32조는 중재지와 심리장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재지와 심리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상사중재에 부합하고, 특히 국제상사중재의 통상적인 처리 방식이다. 이 조항은 동시에 적용법이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는 자유롭게 중재지와 심리장소를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²³⁾

(13) 심리방식의 개혁

개정 중재규칙 제29조는 중재사건의 심리방식을 규정하며, 당사자는 심리방식을 약정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며, 당사자가 약

21)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0.

22)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1.

23)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2.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규칙은 중재판정부가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당사자 의사자치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재판정부에게 중재절차 및 심리방식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동시에 중재판정부가 행사하는 절차 권한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심리방식 또는 중재절차를 결정할 때에, 반드시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각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당사자와 중재판정부는 질문방식 및 변론방식을 선택하거나 적용하여 사건의 심리방식으로 삼을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질문방식 및 변론방식을 도입한 취지는 서로 다른 법률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중재심리 방식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에 적응하는 데 있다.

개정 중재규칙은 동시에 중재판정부에게 절차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중재판정부는 기간이 도과하여 제출한 답변서 또는 반대신청 답변서를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재판정부는 증거제출의 기한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시 절차명령(程序令)을 내리고, 질문서(問題單)를 발부하고, 심리 전 회의를 개최하고, 예비심리를 개시하거나 심리범위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가진다. 중재판정부가 상술 권한을 행사하는 전제는 당사자의 약정 및 중재규칙의 중재판정부에 대한 강제적 요구, 즉 공평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제19조 중재인 의무), 각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며, 각 당사자에게 진술과 변론의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제29조 제1항)이다.²⁴⁾

(14)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 규정의 개선

개정 중재규칙 제40조는 표제를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으로 하고, 중재와 조정의 상호 결합 방법을 집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중

24)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3.

재위원회와 조정의 상호결합 특색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중재규칙의 기초 위에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 밖에서 화해를 한 경우를 더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화해에 근거하여 판정문을 작성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중재와 조정의 상호결합 분쟁해결방식을 개선하였다.²⁵⁾

(15) 중재판정부의 소수의견 또는 다른 의견에 관하여

개정 중재규칙 제43조 제4항 제5항은 소수 중재인 또는 기타 중재인의 서면의견은 반드시 권말에 첨부하도록 하고, 아울러 판정문의 뒤에 부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그 서면 의견은 판정문의 구성 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견을 판정문 뒤에 부가하도록 허락하여 중재인에 대한 감독과 제약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정문의 질을 제고 하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중재판정부 판정의 투명성을 증가시켰다.²⁶⁾

(16) 기타 개정

개정 중재규칙은 역시 중재의 비밀유지 원칙, 중재인의 고지의무, 답변서에 대한 형식 요구, 반대청구 답변서 기한에 대한 요구 등을 추가하였다. 개정 중재규칙은 문자상으로도 수정을 하여, 규칙 언어의 정확성을 더 한층 높였다.²⁷⁾

4. 개정 중재규칙에 대한 평가

개정 중재규칙은 국제상사중재의 최신 발전 상황을 구현하였고, 동시에 중국 중재제도의 구체적인 상황도 고려하였으며, 당사자 의사자치

25)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4.

26)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5.

27) 위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16.

를 강조하는 전제하에서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대한 관리권을 더 많이 부여하였고, 동시에 중재인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직책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더 한층 강조하였다.

그러나 개정 중재규칙의 지도사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 중재 규칙은 현행 법률의 체계 아래서 개정된 것이고, 중국에서 중재법이 중국의 중재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중재법은 그대로 두고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중재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중재규칙에서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제도가 중재법과 중재규칙이라는 두 가지 규범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중재법과 섭외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I. 중국 중재법상의 문제점 개선

1. 개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시장경제에 익숙한 국가들과 같이 법을 신축성 있게 운용할 만큼 법이론에 대한 연구나 법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법개정에 필요한 경험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중재법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중국의 중재 환경을 고려할 때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중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재법을 개정하지 않고, 중재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이번 중재규칙의 개정도 중재법은 그대로 두고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중재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한계 때문에, 중재규칙에서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기존에 중국 중재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고,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검토한다.

2.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1) 당사자자치 원칙의 강화

중국 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의 자치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중재법에서 모델중재법에 비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관중재만을 인정한다. 통신문서의 수령에 대한 별도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재규칙의 선정의 완전한 자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중국 중재규칙의 적용을 강제한다. 중재인 수, 중재인선정 절차, 중재인 기피 절차, 중재인의 보궐에 대한 자유로운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중재지, 절차개시, 중재신청서류 및 답변서의 제출, 중재신청 서류 기재사항 및 청구내용의 수정, 감정인 선정, 중재판정 결정방법,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에 대한 자유로운 합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²⁸⁾

2005년 중재규칙은 중재규칙의 선정, 중재인선정절차, 중재지 선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하고 있다.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만일 당사자 간에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약정하거나 본 규칙의 관련

28) 윤진기, 앞의 논문(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p.127.

된 내용을 수정하였을 경우 동 합의에 따른다. 그러나 합의내용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여,(중재규칙 제4조 제2항) 중규재적 선정에 당사자의 자치권을 대폭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사자자치와 관련된 중재법상의 문제들이 자연스레 해결되게 되었다. 다만 중국이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규정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자치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제성 법률규정의 범위는 실무를 통하여 점차 구체화 될 것이며, 이를 구체화한 데는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재기구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

1) 중재기구의 독립성 결여에 대한 변화

중재법은 제14조에서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구에서 독립한 민간기구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반관반민의 행정기관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 되어 왔다. 중국의 섭외중재기구인 CIETAC은 자칭 사회단체라고 일컫는 ‘중국국제상회’²⁹⁾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국제상회는 실제로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중국국제상회와 중재위원회의 역대 주임과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당사자들이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³⁰⁾ 중재법 제정 당시에는 이러한 견해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의 중재환경이 변화되어 중국 중재기구, 특히 CIETAC의 민간성을 인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³¹⁾ 중국 중재기구의 독립성은 중재법에 이미

29) 원래의 기구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이며, 이 기구는 1988년부터 ‘중국국제상회(CCOIC :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30) 성백영,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3. 26. 앞의 논문, p.33. 이 자료는 특히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한 것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매우 뛰어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천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CIETAC 독립성 결여의 문제는 사실상의 문제였고, 이번에 대폭 당사자자치가 확보되어 실제로 중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되어야 한다. 중재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며, 행정기관과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고,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다.(중재법 제14조) 현재 중국에는 현재 중재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중재협회를 아직 결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³²⁾ 중재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조건에 부합하는 중재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모두 210개로 예정되어 있고, 이들은 성, 직할시, 자치구의 사법행정부서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사법행정부문의 중재위원회 관리는 등기관리에 그치며 실질심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초기에 실제로 일부 지역의 사법 행정부서는 중재위원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조하는 전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자들은 이를 중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중재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징후로 파악하였다.³³⁾ 국내중재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도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문제이며, 국내중재기구의 경우에는 아직은 중재환경이나 중재행태가 보다 공개적이고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사건 관할의 명료화

중국 중재법이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통일적으로 규율한 후 국내중재기구와 섭외중재기구간의 사건 관할이 다소 불분명해졌고 이것은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였다. 실제로 국내분쟁을 섭외중재기구의 명망이 국내중재기구보다 높으므로 국내분쟁을 섭외중재기구에 신청하여 수리된 케이스가 있다. 또 일부는 당사자의 무지로 섭외적 요소를 가지는

31) 정영진, “중국섭외중재제도-CIETAC을 중심으로” 법제처, 동북아법제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12, pp.237-238도 유사한 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 이러한 사실은 금년(2006년) 초에 청도중재위원회 주임에게서 확인한 것이다.

33) 성백영, 앞의 논문, pp.29-30.

분쟁을 국내중재기구에 신청한 것도 있다. 국무원은 새로 설립된 (국내의) 중재위원회도 섭외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발하여,³⁴⁾ 국내중재위원회가 ‘섭외중재’ 사건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섭외분쟁에 대한 국내중재기구의 관할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으나,³⁵⁾ 국내분쟁에 대한 섭외중재기구의 사건수리 범위에 대해서 혼란이 예상되었다. 그 후 중국은 1998년 4월 29일 섭외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된 분쟁은 섭외중재기구에서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문제로 자작되어 왔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³⁶⁾

그 후 중국국제상회는 2000년 9월 5일 중재규칙을 개정하여 CIETAC의 사건 수리 범위를 모든 국내분쟁으로 확대하였다.³⁷⁾ 그러나 이 중재규칙에는 수리하지 않는 분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었으나, 2005년 중재규칙은 이를 삭제하고 중재위원회가 1.국제 또는 대외 분쟁, 2.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또는 대만지역과 관련된 분쟁, 3.국내분쟁으로 인한 중재신청을 접수한다고 규정하여,(중재규칙 제3조) 사건관할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소하게 되었다.

(3) 중재규칙의 자유로운 선택

중국은 중재규칙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다. 1995년 CIETAC 중재규칙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없었다.³⁸⁾ 즉, 만약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조항에 중국섭외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반드시 중국섭외중재기구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34) 國務院辦公廳關於貫徹實施<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需要明確的幾個問題的通知, 國務院辦公室發(1996.6.8.)22號, 제3조 참조.

35) 성백영, 앞의 논문, p.32.

36) 1998년 CIETAC 중재규칙 제2조 참조.

37)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3, p.266.

38) 1995년 CIETAC 중재규칙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교부하여 중재하기로 일단 동의한 경우에는 모두 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일부 국가에서 중재기구와 중재규칙을 분리하여 당사자 쌍방이 자유롭게 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며, 일부국가 중재기구의 규정이 쌍방 당사자가 당해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을 적절히 수정 또는 보충하여 당해 중재사건의 심문의 특정절차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도 달랐다.

1998년 CIETAC규칙에 의하면, 만약 당사자가 체결한 중재합의에 CIETAC에서 중재를 할 것을 규정하였다면 원칙적으로 CIETAC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만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하고 또 중재위원회가 동의한 경우에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하였다.³⁹⁾ 그러나 이 규정도 모델중재법의 규정에 비하여 제한적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⁴⁰⁾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중재규칙이 "당사자가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신청하여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중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만일 당사자간에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약정하거나 본 규칙의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을 경우 동 합의에 따른다. 그러나 합의내용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중재지의 강제성 법률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중재규칙 제4조 제2항)

(4)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의 엄격성의 완화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관할권을 제외시킨다. 그리고 중재판정이 법원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된 것처럼 중재합의가 없는 중재판정은 법원이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하다.

39) 1998년 CIETAC 중재규칙 제7조.

40) 윤진기, 앞의 논문(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p.118.

그러나 중국의 중재법은 유효한 중재합의가 갖추어야할 요건을 너무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⁴¹⁾ 기본적으로 중재합의는 (1) 중재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2) 중재사항, (3) 선정한 중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중재법 16조) 중재합의가 중재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하지 못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중재법 제18조) 이러한 요건은 「뉴욕협약」이 단지 ‘서면형식’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상세하다.⁴²⁾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중재규칙이 “당사자 간에 본 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중재기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중재규칙 제4조 제3항) 중재위원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CIETAC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요건흠결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 있다. 이 점에서 중재규칙은 부분적으로 요건완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2005년 중재규칙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된다. 서면형식에는 계약서, 편지, 전신, 팩스, 전자통신 및 이메일 등 그 내용을 유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형식이 포함된다. 신청서와 답변서를 교환하는 과정에 일방 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있다는 주장에 상대방이 부인하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중재규칙 제5조 제3항) 중재청구에 대한 의사표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재합의 유효요건 엄격성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중재인 관련 문제점에 대한 변화

1)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과 문제점

중국 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

41) 성백영, 앞의 논문, pp.30-31.

42) 그 이유에 대해서는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앞의 책, pp.36-38 참조.

성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자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하고, 제3의 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지정하여 인정한다. 제3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된다.(중재법 제31조 제1항)

중재법에 의하면 의장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선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실제로 쌍방 당사자의 경우 이미 악화된 감정 때문에 합의하여 의장중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주임이 직권으로 지정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시 다수 의견을 결론으로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중재인의 의견이 중재판정으로 된다. 이 경우 중재판정은 중재위원회의 의도대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⁴³⁾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3의 중재인은 이미 선정된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⁴⁴⁾

2005년 중재규칙은 중재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⁴⁵⁾ 2005년 중재규칙은 이전 중재규칙과는 달리 의장중재인 선정에

43) 성백영, 앞의 논문, p.30.

44) 윤진기, 앞의 논문(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 중재법의 비교), p.114.

45) 제22조 3인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 1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의뢰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기간 내에 선정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 의뢰하여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2.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함께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 위임하여 지정한다.
3. 당사자는 각각 1-3명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추천하여 상기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중 1명이 쌍방에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 이 추천받은 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중재인으로 보고, 1명 이상이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중 1명을 의장중재인으로 확정하고 이 추천받은 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중재인으로 보며, 동시에 추천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추천한 명단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
4. 당사자가 상기의 규정대로 공동으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관하여 “당사자는 각각 1-3명의 중재인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추천하여 상기 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 중 1명이 쌍방에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 이 추천 받은 자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중재인으로 보고, 1명 이상이 동시에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중 1명을 의장중재인으로 확정하고 이 추천받은 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한 의장중재인으로 보며, 동시에 추천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추천한 명단 외에서 의장중재인을 지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중재규칙 제22조 제3항)

이에 대하여, CIETAC은 당사자에게 의장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더 많은 결정권을 주어 의장중재인 선정을 더욱 개방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⁴⁶⁾ 이 규정이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당사자가 1-3명의 의장중재인을 추천하더라도 쌍방이 동시에 1인을 추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결국 중재위원회 주임이 당사자의 추천자가 아닌 자를 의장중재인으로 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2005년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자는 중재위원회 주임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인정받고 중재인, 의장중재인 및 단독중재인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중재규칙 제21조 제2항) 이 한도 내에서 중재인 선정의 비합리성이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5년 중재규칙이 “만일 당사자 간에 기타 중재규칙을 적용한다고 약정하거나 본 규칙의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였을 경우 동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중재규칙 제4조 제2항)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중재인 선정의 비합리성이 많이 해소 되었고 생각된다.

46) 關於修訂《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的說明, 앞의 자료, 三. 規則修訂的主要內容, 9.

2)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 강화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중재법 제13조) 그동안 CIETAC의 중재인 명부에는 적지 않은 외국 중재인이 등재되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고 있어, 3인의 서로 다른 국적의 중재인이 중재판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세계의 기타 중재기구에서 통상 볼 수 있는 문화적 중립성을 중국에서는 보장 받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⁴⁷⁾

2005년 중재규칙은 “당사자는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가 제공한 중재인명부 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합의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선정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정한 자는 중재위원회 주임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인정받고 중재인, 의장중재인 및 단독중재인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 하여(중재규칙 제21조 제1항, 제2항)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중재인명부 외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서 문화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재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중재인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의가 있었으나,⁴⁸⁾ 중국의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해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다행히도 CIETAC에서 이를 수용하였다.

특히 2005년 5월 1일부터 사용되는 CIETAC의 새로운 중재인명부는 총 7권이 있으며, 여기에는 모두 1025명, 그중 중국국적 중재인 793명,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및 외국국적 중재인이 232명이 등재되어 있다.⁴⁹⁾ 외국 국적 중재인의 숫자가 이미 상당수에

47) 성백영, 앞의 논문, p.34.

48) 이 경우 중재인 지정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는 李井杓, “中國涉外經濟貿易仲裁協議和裁決之法理研究,” 中國人民大學 博士學位論文, 1998. 5, p.151 참조.

49) “賀仲于2005年5月1日起啓用新的仲裁員名冊,”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華南分會 홈페이지> 首頁 > 新聞動態, <http://www.sccietac.org/cietac/gb/content/content.jsp?id>

이르고 있어서 중재판정부 구성상의 문화적 중립성에 대한 염려는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된다.

3. 상존하는 문제점 검토

(1) 중재합의 준거법 규정의 부존재

중재법에는 중재합의의 법률적 적용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섭외 중재합의의 효력을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뉴욕조약 제5조에는 본국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을 적용하거나 판정지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델중재법은 제34조와 제36조에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외국인과 관련된 섭외중재합의의 효력유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법률을 적용해 판정한다면 외국인 당사자는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⁵⁰⁾

(2) 중재절차 관련 문제점

1) 증거조사상의 문제점

중재법 제43조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법에서나 중재규칙에는 이 조항에 상응하는 피조사인의 조사협조 제공에 관한 아무런 조항이 없다. 실제로 중재인이 피조사인의 자금상황을 조사하고 싶을 때 은행이 고객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를 거절하면 중재 인은 속수무책이다. 또한 중재심리 과정 중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사

=2661.

50) 성백영, 앞의 논문, pp.26-27. 실제로 한 케이스에서 중재합의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으나 분쟁발생 후 일방이 중국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다른 당사자는 법원의 중재합의의 유효성판정 심사권이 없음을 항변하였다. 법원은 중재위원회의 선정이 중재조항에 없음을 이유로 ‘중재합의불명확’의 판결을 내렸다. 위의 논문.

기나 밀수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중재위원회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⁵¹⁾

중재법은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증거보전의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하급인민법원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²⁾ 모델중재법에 의하면 당사자나 중재판정부가 모두 법원에 증거조사의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면 증거수집의 곤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타감정인의 증언기회 보장의 결여

중재법 제44조 및 2005년 중재규칙 제38조는 감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전문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인을 지정하여 검증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검증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중재규칙 제38조 제1항) 전문가보고서와 검증보고서의 사본은 당사자 쌍방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전문가와 검증인의 출정을 요구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거쳐 전문가와 검증인은 출정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가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구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38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감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에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모델중재법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전항의 감정인은 그 자신의 서면 또는 구두의 보고를 인도한 후에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그 감정인에게 질문을 할 기회 및 다른 감정인이 그

51) 위의 논문, p.29.

52) 모델중재법 제27조; 중재법 제46조.

전문가적인 증언을 할 기회가 있는 심문회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모델중재법 제26조 제2항) 감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감정인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감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재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시 다른 전문가와 함께 참가하여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중재판정부가 이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을 것이다.

3) 보전조치의 불완전

중국 중재절차상의 보전조치는 중재법 제28조(재산보전), 제46조(증거보전), 제68조(섭외중재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258조(섭외중재 재산보전), 및 중재규칙 제 17조(증거보전), 제18조(재산보전) 등 다양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해사 중재의 경우에는 중국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23조(해사청구권보전, 증거보전, 해사강제명령) 및 2000년 7 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해사소송특별절차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중국의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해사사건을 제외하고 중재 전(前) 보전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보전신청을 하고,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교부하고, 인민법원은 보전조치의 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법의 태도는 중재합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⁵³⁾ 더 나아가서 중재지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한국이나,⁵⁴⁾ 마찬가지로 중재절차 개시 전에 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독일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다.⁵⁵⁾

53) 한국 중재법 제10조.

54) 한국 중재법 제2조 제1항.

오히려 중재신청 전에 보전조치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재합의를 회피하여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절차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장래 유리한 중재판정을 얻게 된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중재합의로 이루려하는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재 전에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기관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모델중재법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 절차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허여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⁵⁶⁾ 이러한 입장은 명백히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중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중재 전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날의 보전조치에 관한 입법추세를 반영하여,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공동으로 보전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⁵⁷⁾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중재지가 외국이나 중국이나 관계없이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재산보전에 관해서만 중재 전에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증거보전에 대해서도 중재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55) 독일민사소송법 제1033조에서는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또는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41조에 중재판정부도 보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재판정부가 내린 보전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강제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민사소송법 제1041조 제2항 내지 제3항 참조. 강병근, “보전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중재, 2000년 봄호(295호), 대한상사중재원, p.118.

56) 모델중재법 제9조.

57)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은 절차를 두 번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세히는 정선주,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에 관하여,” 중재, 1994년 7월호(제269호), 대한상사중재원, pp.12-13 참조. 따라서 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 민사소송법 제93조는 당사자는 소송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 전의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것은 입법자가 소전 증거보전과 소전 재산보전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한다.⁵⁸⁾ 그러나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을 달리 취급해야 할 실익이 없는 만큼, 증거보전에 대해서도 중재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3) 중재판정 관련 문제점

1) 중재판정의 결정방법

중재판정은 다수의견에 따라 작성하고, 소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기록부에 기입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판정한다.(중재법 제53조)

이 규정 자체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으나, 의장중재인 결정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⁵⁹⁾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장중재인의 선임방법을 바꾸어 의장중재인은 이미 선정된 중재인이 합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중간판정과 부분판정에 대한 개념구분 문제

중재법 제55조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중재할 때에 그 중 일부의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먼저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간판정과 부분판정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규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⁶⁰⁾ 그러나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중재판

58) 解常晴, “國際仲裁中的臨時保全制度及其發展前景(六),” 中國仲裁網> 仲裁講座, <http://www.china-arbitration.com>, 2002. 7. 27, 四. 中國涉外仲裁保全制度及其有待完善之處 참조.

59) 이 논문 III. 2. (5) 1)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과 문제점’ 참조.

60) 李井杓, 앞의 논문, p.154.

정부가 동의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과정의 임의의 시점에서 사건의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중간판정 또는 부분판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간판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종국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1995년 중재규칙 제57조, 2005년 중재규칙 제44조), 실제 운용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

부분판정(일부판정)은 종국판정과 똑같이 한 번 판정을 내리면 고칠 수가 없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부분판정 속에서 판정된 사항은 종국판정에서 다시 판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중간판정과 구분되기 때문에, 중재법에서 양자를 구분 없이 규정하기 보다는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중재판정 집행 관련 문제점

1)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의 실질심사

중재판정의 집행거절에 관한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규정은⁶¹⁾ 인민법원이 중국 섭외중재기구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단지 절차상의 심사만 행할 뿐이며, 실체상의 즉,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관한 심사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⁶²⁾

61) 중국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작성한 중재판정은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여 중재판정이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사 및 사실확인을 거친 후 집행을 하지 않는 재정(裁定)을 한다 :

- (1) 당사자가 계약 중에 중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의 중재부탁에 이르지 못한 경우
- (2) 피신청인이 중재인을 지정할 수 없었거나 중재진행절차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타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속하지 않는 원인으로 의견을 전술할 수 없었던 경우
- (3)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4) 판정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리 없는 경우

62) 陶春明·王生長,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程序理論與實務(北京 : 人民中國出版社, 1992), pp.78-79. CIETAC 산하 중재연구소가 1994년 9월부터 전국 21개 인민법원에 무작위로 추출 조사한 30건의 중재판정중 집행되지 않은 것은 6건으로 나타나 불집행률

그러나 중재판정에서 이긴 당사자가 패한 당사자의 재산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면 현지의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들 이유에는 절차심사를 명목으로 내세워 중재법에서 금지하는 실체문제를 심사하기도 하고 현지 거주자의 재산보호 명목으로 거절한 사례도 나타났다.⁶³⁾

다만, 1995년 8월 28일 「인민법원의 섭외중재 및 외국중재 사항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국 섭외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집행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외국 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중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한 사유 중의 하나를 구비하고 있거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집행의 재정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 전에 반드시 당해 관할지역의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고급인민법원이 부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 거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심사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회답을 기다린 후에 비로소 부집행 또는 승인 및 집행의 거절을 재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⁶⁴⁾ 이러한 조치는 종래와 같은 지방 인민법원의 자의적인 집행거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韓健·宋連斌, “論我國國際商事仲裁機構和法院的關係,” 仲裁與法律通訊, 1997. 8, p.8. 집행거절된 6건중 2건은 ‘증거불충분’ ‘증거부족’의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것이고 2건은 ‘공공질서위반과 국익훼손’의 이유로 내 세웠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법원이 중재의 실체에 대해 심사한 혼적이 역력한 것이라 하겠다. 성백영, 앞의 논문, p.31.

63) 영국인 당사자와 중국인 당사자 간의 중재에 있어 영국 측 당사자는 중국 측 법원에 피신청인의 예금동결을 신청하였으나 법원 측이 협조하지 않은 사례와 또 다른 영국인 당사자가 중국의 인민법원(寧夏省 소재)에 집행신청한 중재판정을 법원 측은 현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집행을 거절한 바가 있다. 전자는 결국 집행하였으나 후자는 영국인 당사자가 결국 포기한 케이스였다. 성백영, 앞의 논문, p.33.

64) 李井杓, 앞의 논문, p.150 참조

2) 중재판정집행의 곤란

당사자가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을 중국법원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은 법의 규정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로 어려움이 존재한다.⁶⁵⁾ 이러한 집행곤란의 문제는 한중간의 교역분쟁 해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린 중재판정이 중국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⁶⁶⁾ 문제는 한중 양국이 모두 「뉴욕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다.⁶⁷⁾

IV. 결 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시장경제에 익숙한 국가들과 같이 법을 신축성 있게 운용할 만큼 법이론에 대한 연구나 법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관계로 법개정에 필요한 경험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기다려서 법률 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중재법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 중국의 중재 환경을 고려할 때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중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중재법을 개정하지 않고, 중재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여 왔다.

65) 이 중재판정 “집행난”的 문제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대중국 교역에서 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기업인들을 설득할 명분을 상실케 한다. 중국은 중재판정의 집행곤란 문제로 인하여 오랫동안 쌓아온 자국 중재기관의 명성에 이미 상당한 손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중재기관의 신뢰에도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66) 대한상사중재원 한중클레임관련자료(1998) 참조.

67) 그러나 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집행곤란에 관한 문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일본 등 모든 교역국들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중재법은 중국의 중재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중재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중재제도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만, 2005년 중재규칙의 개정은 중재제도가 중재법과 중재규칙이라는 두 가지 규범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중재법과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과거 중국 중재법의 최대의 문제점은 그것이 당사자의 자치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 중재규칙의 개정으로 당사자들이 다른 중재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CIETAC 중재규칙도 당사자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평가된다.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재기구의 독립성이 사실상 강화된 점, 사건 관할이 명료화된 점, 중재합의 유효요건의 엄격성이 어느 정도 완화된 점,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시도한 점,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이 사실상 강화된 점 등이 2005년 중재규칙의 개정으로 기존의 문제점이 해소된 부분이다. 그러나 중재인 선정방식은 중재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기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에서, 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한 것으로는 중재합의 준거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증거조사 시 법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없는 것, 다른 감정인의 증언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것, 중재 전 보전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보전신청의 영토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 중재판정의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의장중재인 선정의 공정성 확보가 요구되는 것, 중간판정과 부분판정에 대한 개념구분이 중재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있다.

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상의 문제이지만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의 실질심사, 중재판정집행의 곤란 등이 중국의 중재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재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장 잘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중재법의 개정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의 열악한 사법환경으로부터 초래되는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나 중재 판정의 집행곤란 같은 문제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사법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근, “보전조치의 비교법적 검토,” *중재*, 295호, 대한상사중재원, 2000년 봄.
 成百營, “*中華人民共和國中재법의 내용과 문제점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논문*, 1998. 3. 26.
- 윤진기, “*중국중재법*,” *기업법연구*, 제12집, 한국기업법학회, 2003. 3.
- 윤진기, “*중국중재법상의 문제점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중재*, 제 291호, 대한상사중재원, 1999. 봄.
- 윤진기, “*중국 CIETAC 중재규칙상의 보전조치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2.
- 정선주,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보전처분에 관하여*,” *중재* 제269호, 대한상사중재원, 1994. 7.
- 정영진, “*중국섭외중재제도-CIETAC을 중심으로*,” *법제처, 동북아법제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12.
- 대한상사중재원 한중클레임관련자료(1998)
 陶春明·王生長,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程序理論與實務*, 北京, 人民中國出版社, 1992.
- 李井杓, “*中國涉外經濟貿易仲裁協議和裁決之法理研究*,” *中國人民大學博士學位論文*, 1998. 5.

韓健·宋連斌, “論我國國際商事仲裁機構和法院的關係,” 仲裁與法律通訊, 1997. 8.

關於修訂《中國國際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的說明, 2004年12月16日于北京,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홈페이지](#) > 首頁 > 新聞動態 > 貿仲2005版新規則出台, <http://www.cietac.org.cn/news/xd.htm>.

國務院辦公廳關於貫徹實施〈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需要明確的幾個問題的通知, 國務院辦公室發(1996.6.8.) 22號。

全國人大常委會法制工作委員會,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律釋評, 北京: 法律出版社, 1996.

解常晴, “國際仲裁中的臨時保全制度及其發展前景(六),” 中國仲裁網> 仲裁講座, <http://www.china-arbitration.com>, 2002. 7. 27, 四. 中國涉外仲裁保全制度及其有待完善之處.

ABSTRACT

The 2005 Revision of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Improvement of the Problems Related to Chinese Arbitration Law

Jin-Ki Yoon

The arbitration rule of CIETAC was vastly revised and was put in force on May 1, 2005. By its revision, China has improved its arbitration system.

Chinese arbitration law had many problems when it was enacted in 1995, but the problems could not be avoided because of the poor surroundings for arbitration in China. As China has not had much experience in operating its legal system effectively, and also has little in the way of studies on legal theory that would allow it to deal with its laws in a flexible manner, authorities usually wait to revise a law until enough relevant experience has been accumulated. Therefore, during the 10 years since its enactment, China has resolved the problems within its arbitration law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rather than by revision of the law itself. As this law is a basic one in ruling the arbitration system in China, there are some limitations as to how far the system can be developed through revision of arbitration rule alone. In spite of the limitations, the revision in 2005 contributed a great deal to resolving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Chinese arbitration law.

The biggest problem in the arbitration law is the Chinese arbitration law that restricts party autonomy. With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rule,

many problems concerning party autonomy were circumvented. This occurred because the arbitration rule now provides parties the opportunity to choose arbitration rule other tha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and even allows parties to agree to amend articles in the CIETAC arbitration rule -- a very important revision indeed. In addition to party autonomy, there are other improvements : for example, there is an enhancement of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the CIETAC, clearing of jurisdiction, easing in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improvement in the way arbitrators are chosen, and enhancement in the cultural neutrality of the arbiter.

Problems still remain that can only be solved by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itself. These problems relate to the governing law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collection of evidence, custody of property, selection of chief arbiter, interlocutory awards, etc. In addition, some non-legal problems must also be resolved, like the actual judicial review of arbitration awards or difficulties of executing arbitration awards.

Key Words : arbitration, Chinese arbitration, China, Chinese law,
arbitration rule, foreign law